

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 서류 안내

수급자격 인정요건	■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로 피보험단위기간 1년 이상 ■ 폐업 사유가 인정 사유에 해당할 것 ■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
폐업사유	☐ 육아 등의 문제로 사업 운영이 어렵고 ○ 임신, 출산, 육아(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) ☐ 배우자 등 동거친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☐ 육아 관련 사유가 해소되어 구직활동 가능 시점 신청 ○ 출산 후 45일 경과, 퇴사 전후 육아 상황 확인 필요
준비서류	☐ 폐업사실 증명원(국세청): 폐업일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 ☐ 고용보험 상실처리(근로복지공단) ☐ 고용보험 완납증명서(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토탈서비스, 무인민원발급기) ☐ 폐업 사유 확인 서류 ○ 임신·출산·육아로 인한 폐업 확인서(별도 양식) ○ 주민등록등본(자녀 출산 후) ○ 육아 도움을 받기 어려움 확인 서류 - 배우자, 동거친족, 부모님 등 -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재학증명서, 진단서, 장애인등록증 등 ※ 퇴사 당시 배우자가 휴직 중인 경우 불가 ○ 육아 사유 해소 및 구직활동 가능 확인 서류 - 어린이집·유치원 재원증명서 · 재원 가능시간 기재(부모 근로 시 가능시간 함께 기재) - 초등학교 재학증명서 - 학원 재원증명서(학원 수강시간 기재) - 육아자가 생긴 경우 · 육아확인서(육아자 자필 기재) · 육아자와 관계확인서류: 가족관계증명원 · 육아자 주소 확인: 주민등록등본 ☐ 기타 추가서류(필요시)
☐ 수급기간 연기: 구직급여는 폐업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(이후 소멸) ○ 육아 기간이 1년이 넘게 소요될 경우, 폐업일로부터 1년 이내 연기 신청 ○ 서류: 임신출산확인서, 주민등록등본 등	
※ 필요시, 추가서류 요청이 가능합니다. ※ 진주고용센터 팩스: 0508-8230-0475	

임신·출산·육아로 인한 폐업 확인서

신청인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		
	사업장명			
	사 업 장 소 재 지			
	사업개시일		폐업일	
육아	유형	☐ ① 임신 ☐ ② 출산 ☐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(배우자 등 동거 친족의 육아가 불가능)		
	출산(예정)일			
	동거 친족의 육아가 불가능한 사유 (③유형)			
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: (인)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시청장 귀하				
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고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				

육아확인서

수 급 자 격 신 청 인	이	름	
	생	년 월 일	
	연	락 처	
	주	소	

위 수급자격 신청인(이름:)의 자녀(이름:)를
본인(이름: , 관계:)이 20 년 월 일부터
육아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위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,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
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작 성 자 (육 아 자)	이	름	(서명 또는 인)
	생	년 월 일	
	연	락 처	
	주	소	

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시청장 귀하

수급자격신청인 의견진술서

성명		생년월일	
사업장명		퇴사(폐업)일자	

위 본인은 사업장 퇴사(폐업) 사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필로 의견을 작성합니다.

상기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수급자격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※ 유의 사항

- 수급자격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격이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.
- 또한 심사 과정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수급자격 신청서의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반환하여야 하며,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수급자격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격이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.
- 또한 심사 과정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수급자격 신청서의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반환하여야 하며,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